

울산지방법원 2020. 6. 19 선고 2019가단1593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주식회사 C

3. D

변 론 종 결 2020. 5. 15.

판 결 선 고 2020. 6. 1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1.부터, 피고 B, D은 2020. 1. 29.까지,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. 12. 2.까지 각 연 5%, 그 각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8. 2. 20. 피고 B가 추진하는 대전 중구 E 소재 열병합발전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고 한다)에 2억원을 투자하였다.

나. 원고가 2018. 7. 23. 피고 B에게 위 투자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,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투자 원금 2억원을 2018. 9. 말까지 반환하기로 약정(이하 '이 사건 제1 투자금 반환 약정'이라고 한다)하였으며, 원고의 친구인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'이라고 한다).

다.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'피고 회사'라고 한다)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는데, 피고 회사는 2019. 2. 21. 원고에게 '위 투자금은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기 투자되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을 거쳐 2019. 4. 말까지 투자금 전액을 돌려 줄 것을 약속한다'(이하 '이 사건 제2 투자금 반환 약정'이라고 한다)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4호증, 을가1, 2호증, 을나1호증, 을다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하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 B는 이 사건 제1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, 피고 D은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,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. 5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인 피고 B, D은 2020. 1. 29.까지, 피고 회사는 2019. 12. 2.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각

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회사

피고 회사는, 원고가 반환을 구하고 있는 위 돈은 투자금이므로, 원고는 투자에 따른 손실 역시 부담하여야 하고, 원고가 2019. 12. 말까지 반환기일을 유예해 준 바 있으므로,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는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, 이 사건 제2 투자금 반환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, 피고 회사의 손실 부담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제2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. 따라서 피고 회사의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. 피고 B

피고 B는, 위 투자금은 피고 회사에 지급된 돈이고 피고 회사 설립 전이라 피고 B가 지급받았을 뿐이며, 피고 회사 설립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반환을 약정함으로써 피고 B 개인에게 위 투자금 반환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.

피고 B의 주장 취지는 불분명하나, 피고 B의 이 사건 제1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무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,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제1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른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설회할 여지가 있다.

우선,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,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원고가 위 2억원을 투자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, 나아가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제1 투자금 반환 약정 시 피고 회사가 설립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다음으로, 채무 면제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,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

이 사건 제2 투자금 반환을 약정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제1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, 원고가 피고 B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.

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피고 D

피고 D은,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은 피고 회사가 설립되지 않아 피고 B에게 투자금 반환책임을 물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,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투자금 반환책임이 있을 뿐이고, 더욱이 위 연대보증 약정은 원고의 강요로 체결되었으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 피고 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였다거나,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 D의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지혜